|  |  |  |
| --- | --- | --- |
| **인터넷문화 관리 임시규정**  문화부 령 제51호  《인터넷문화 관리 임시규정》을 2011년 2월 11일의 문화부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蔡武  2011년 2월 17일  **제1조** 인터넷문화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인터넷문화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의 건강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터넷 안전 보장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그리고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문화제품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생산, 전파 및 유통되는 문화제품을 가리키며, 이에는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인터넷을 위해 전문 생산하는 인터넷 음악오락, 사이버게임, 인터넷 공연작품(프로), 인터넷공연, 인터넷 예술품,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의 인터넷 문화제품  (2) 음악오락, 게임, 공연작품(프로), 공연, 예술품,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제품을 일정한 기술수단으로 제작, 복제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는 인터넷 문화제품.  **제3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문화 활동이라 함은 인터넷문화제품 및 그 서비스 활동을 가리키며, 주로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인터넷문화제품의 제작, 복제, 수입, 발행, 방송 등 활동  (2) 문화제품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유선전화기, 이동전화기, 텔레비전, 전자오락기 등의 사용자 단말, 그리고 PC방 등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에 발송하여 사용자가 유람, 흠상, 사용하거나 다운로드하게 하는 온라인 전파행위  (3) 인터넷문화제품의 전시, 게임 등 활동.  인터넷문화 활동은 영리성과 비영리성 두 가지로 구분한다. 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수취하거나 전자상거래, 광고, 협찬 등의 방식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 인터넷문화제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키며, 비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사용자에게 인터넷문화제품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문화업체라 함은 문화행정부서와 전신관리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거쳐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인터넷문화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 시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하고 공중의 문화소질 제고, 경제발전 추진, 사회진보 촉진에 유익한 사상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인민의 정신적 생활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인터넷문화 발전 및 관리의 방침, 정책 및 규획을 제정하며, 전국 인터넷문화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해 심사 허가를 실시하며, 비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업체단위에 대해서는 등록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문화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  **제7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소 명칭, 주소, 조직기구 및 정관을 갖출 것  (2) 확정된 인터넷문화 활동범위가 있을 것  (3) 인터넷문화 활동에 필요하며 상응하는 종업자격을 취득한 업무관리인원과 전문기술인원을 8명 이상 확보할 것  (4) 인터넷문화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작업장소 및 상응하는 경영관리 기술조치를 갖출 것  (5) 등록자본금은 최저 100만 위안이며, 그중 사이버게임 경영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 1,0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확보할 것  (6)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의 설립을 심사허가 시에는 전항에 열거한 요건 이외에 인터넷문화업체의 총량, 구조 및 분포 규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서 심사 허가한다.  **제9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 설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기업명칭 예비인가 통지서 또는 영업집조와 정관  (3) 자금원, 금액 및 그 신용증명서류  (4)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및 주요 경영관리인원, 전문기술인원의 자격증명과 신분증명서류  (5) 작업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6) 업무발전보고서  (7)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 설립을 신청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나 계속 경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연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0조**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는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보고서  (2) 정관  (3) 자금원, 금액 및 그 신용증명 서류  (4)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주요경영관리인원, 전문기술인원의 자격증명과 신분증명 서류  (5) 작업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6)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1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전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에 가서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문화업체는 그 사이트 홈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문화행정부서가 발급한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하고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이 발급한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그 명칭, 사이트명칭, 도메인명, 법정대표자, 등록주소, 경영주소, 등록자본금, 지분구조 및 허가경영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행정부서에 가서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인터넷문화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법에 따라 기업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80일이 되어도 인터넷문화 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 심사 허가를 실시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말소하며, 아울러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에 통지한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인터넷문화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원 등록 업무를 처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를 처리하고 아울러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에 통지한다.  **제15조**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의 경영은 문화행정부서의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실시해야 하며,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은 마땅히 문화부에 보고하여 내용 적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부는 내용 적정심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전문가 평의 소요시간은 제외)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시에는 비준문건을 발급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를 받고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은 그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승인번호를 명기해야 하며, 제멋대로 제품명칭을 변경하거나 제품내용을 증가 또는 삭제하지 못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에서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단위는 문화부에 등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수입을 중지할 경우 문화부는 그 승인번호를 취소한다.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경영하는 국산 인터넷문화제품은 정식 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아울러 그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인터넷문화업체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 있는 문화제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1) 헌법의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완정에 해를 주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전에 해를 주거나 또는 국가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의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거나 또는 민족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요언을 퍼뜨리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사교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공중도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해를 입히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7조** 인터넷문화업체가 제공하는 문화제품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인터넷문화업체는 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인터넷문화업체는 내부 심사 제도를 구축하여 전문부문을 지정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인터넷문화제품의 내용과 활동에 대한 내부 심사 및 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문화제품의 내용과 활동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인터넷문화업체가 그가 제공한 인터넷문화제품에 이 규정 제16조에 열거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문화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문화업체는 그가 제공한 문화제품의 내용 및 그 일자, 인터넷주소나 도메인명을 기록 백업해야 하며, 기록 백업은 60일 간 보관하여 국가 유관부서에서 의법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허가를 받지 않고서 제멋대로 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무허가 경영 단속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2조**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0조를 위반하고 기간이 지나도 등록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문화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3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아울러 그 사안에 비추어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문화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4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말소시키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문화 활동을 정지시키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5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그가 경영하는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의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승인번호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경영하는 국산 인터넷문화제품의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등록 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그 사안에 비추어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6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제멋대로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삭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그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7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국산 인터넷문화제품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그 사안에 비추어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8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6조의 금지내용이 있는 인터넷문화제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문화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입한 인터넷문화제품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그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6조의 금지내용이 있는 인터넷문화제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문화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입한 인터넷문화제품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그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9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동시에 그 사안에 비추어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제30조** 영리성 인터넷문화단위가 이 규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31조** 이 규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은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잠시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제32조** 이 규정에서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라 함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방식으로 문화영역 행정적 처벌을 가하고 관련 감독검사권, 행정 강제권을 행사하는 행정 법 집행기구를 가리킨다.  **제33조**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가 처벌하는 불법 경영활동은 그 불법 경영행위를 행한 기업등록지 또는 기업의 실제 경영지에 따라 관할이 확정되며, 기업등록지와 실제 경영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한 사이트의 정보서비스 허가지 또는 등록지에서 관할한다.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이트서버 소재지에서 관할하며, 사이트서버를 경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발생지에서 관할한다.  **제34조**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5월 10일에 반포, 2004년 7월 1일에 개정한 《인터넷문화 관리 임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文化部令51号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已经2011年2月11日文化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1年4月1日起施行。  　　　　　　　　　　　　　　　　　　　　 　　　　　 　 部长　蔡武　　　　　　　　　　　　　　　　　 　　 　　　　　 二○一一年二月十七日  **第一条**　为了加强对互联网文化的管理，保障互联网文化单位的合法权益，促进我国互联网文化健康、有序地发展，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维护互联网安全的决定》和《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以及国家法律法规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互联网文化产品是指通过互联网生产、传播和流通的文化产品，主要包括：  （一）专门为互联网而生产的网络音乐娱乐、网络游戏、网络演出剧（节）目、网络表演、网络艺术品、网络动漫等互联网文化产品；  （二）将音乐娱乐、游戏、演出剧（节）目、表演、艺术品、动漫等文化产品以一定的技术手段制作、复制到互联网上传播的互联网文化产品。  **第三条** 本规定所称互联网文化活动是指提供互联网文化产品及其服务的活动，主要包括：  （一）互联网文化产品的制作、复制、进口、发行、播放等活动；  （二）将文化产品登载在互联网上，或者通过互联网、移动通信网等信息网络发送到计算机、固定电话机、移动电话机、电视机、游戏机等用户端以及网吧等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供用户浏览、欣赏、使用或者下载的在线传播行为；  （三）互联网文化产品的展览、比赛等活动。  互联网文化活动分为经营性和非经营性两类。经营性互联网文化活动是指以营利为目的，通过向上网用户收费或者以电子商务、广告、赞助等方式获取利益，提供互联网文化产品及其服务的活动。非经营性互联网文化活动是指不以营利为目的向上网用户提供互联网文化产品及其服务的活动。  **第四条**　本规定所称互联网文化单位，是指经文化行政部门和电信管理机构批准或者备案，从事互联网文化活动的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互联网文化活动，适用本规定。  **第五条**　从事互联网文化活动应当遵守宪法和有关法律、法规，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弘扬民族优秀文化，传播有益于提高公众文化素质、推动经济发展、促进社会进步的思想道德、科学技术和文化知识，丰富人民的精神生活。  **第六条**　文化部负责制定互联网文化发展与管理的方针、政策和规划，监督管理全国互联网文化活动。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对申请从事经营性互联网文化活动的单位进行审批，对从事非经营性互联网文化活动的单位进行备案。  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互联网文化活动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对从事互联网文化活动违反国家有关法规的行为实施处罚。  **第七条**　申请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应当符合《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的有关规定，并具备以下条件：  （一）单位的名称、住所、组织机构和章程；  （二）确定的互联网文化活动范围；  （三）适应互联网文化活动需要并取得相应从业资格的8名以上业务管理人员和专业技术人员；  （四）适应互联网文化活动需要的设备、工作场所以及相应的经营管理技术措施；  （五）不低于100万元的注册资金，其中申请从事网络游戏经营活动的应当具备不低于1000万元的注册资金；  （六）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的条件。  审批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互联网文化单位总量、结构和布局的规划。  **第八条**　申请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提出申请，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审核批准。  **第九条**　申请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应当提交下列文件：  （一）申请书；  （二）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或者营业执照和章程；  （三）资金来源、数额及其信用证明文件；  （四）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及主要经营管理人员、专业技术人员的资格证明和身份证明文件；  （五）工作场所使用权证明文件；  （六）业务发展报告；  （七）依法需要提交的其他文件。  对申请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做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批准的，核发《网络文化经营许可证》，并向社会公告；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网络文化经营许可证》有效期为3年。有效期届满，需继续从事经营的，应当于有效期届满30日前申请续办。  **第十条**　非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应当自设立之日起60日内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备案，并提交下列文件：  （一）备案报告书；  （二）章程；  （三）资金来源、数额及其信用证明文件；  （四）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主要经营管理人员、专业技术人员的资格证明和身份证明文件；  （五）工作场所使用权证明文件；  （六）需要提交的其他文件。  **第十一条**　申请设立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经批准后，应当持《网络文化经营许可证》，按照《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的有关规定，到所在地电信管理机构或者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办理相关手续。  **第十二条**　互联网文化单位应当在其网站主页的显著位置标明文化行政部门颁发的《网络文化经营许可证》编号或者备案编号，标明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颁发的经营许可证编号或者备案编号。  **第十三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变更单位名称、网站名称、网站域名、法定代表人、注册地址、经营地址、注册资金、股权结构以及许可经营范围的，应当自变更之日起20日内到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办理变更手续。  非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变更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业务范围的，应当自变更之日起60日内到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办理备案手续。  **第十四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终止互联网文化活动的，应当自终止之日起30日内到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办理注销手续。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自取得《网络文化经营许可证》并依法办理企业登记之日起满180日未开展互联网文化活动的，由原审核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注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同时通知相关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  非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停止互联网文化活动的，由原备案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注销备案，同时通知相关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  **第十五条**　经营进口互联网文化产品的活动应当由取得文化行政部门核发的《网络文化经营许可证》的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实施，进口互联网文化产品应当报文化部进行内容审查。  文化部应当自受理内容审查申请之日起20日内（不包括专家评审所需时间）做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件；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经批准的进口互联网文化产品应当在其显著位置标明文化部的批准文号，不得擅自变更产品名称或者增删产品内容。自批准之日起一年内未在国内经营的，进口单位应当报文化部备案并说明原因；决定终止进口的，文化部撤销其批准文号。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经营的国产互联网文化产品应当自正式经营起30日内报省级以上文化行政部门备案，并在其显著位置标明文化部备案编号，具体办法另行规定。  **第十六条**　互联网文化单位不得提供载有以下内容的文化产品：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五）宣扬邪教、迷信的；  （六）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七）宣扬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第十七条**　互联网文化单位提供的文化产品，使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利益受到侵害的，互联网文化单位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第十八条**　互联网文化单位应当建立自审制度，明确专门部门，配备专业人员负责互联网文化产品内容和活动的自查与管理，保障互联网文化产品内容和活动的合法性。  **第十九条**　互联网文化单位发现所提供的互联网文化产品含有本规定第十六条所列内容之一的，应当立即停止提供，保存有关记录，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报告并抄报文化部。  **第二十条**　互联网文化单位应当记录备份所提供的文化产品内容及其时间、互联网地址或者域名；记录备份应当保存60日，并在国家有关部门依法查询时予以提供。  **第二十一条**　未经批准，擅自从事经营性互联网文化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依据《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的规定予以查处。  **第二十二条**　非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条，逾期未办理备案手续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止互联网文化活动，并处1000元以下罚款。  **第二十三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二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限期改正，并可根据情节轻重处10000元以下罚款。  非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二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止互联网文化活动，并处500元以下罚款。  **第二十四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三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10000元以上30000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非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三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止互联网文化活动，并处1000元以下罚款。  **第二十五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五条，经营进口互联网文化产品未在其显著位置标明文化部批准文号、经营国产互联网文化产品未在其显著位置标明文化部备案编号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改正，并可根据情节轻重处10000元以下罚款。  **第二十六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五条，擅自变更进口互联网文化产品的名称或者增删内容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停止提供，没收违法所得，并处10000元以上30000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七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五条，经营国产互联网文化产品逾期未报文化行政部门备案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改正，并可根据情节轻重处20000元以下罚款。  **第二十八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提供含有本规定第十六条禁止内容的互联网文化产品，或者提供未经文化部批准进口的互联网文化产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停止提供，没收违法所得，并处10000元以上30000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非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提供含有本规定第十六条禁止内容的互联网文化产品，或者提供未经文化部批准进口的互联网文化产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停止提供，处1000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九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八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责令改正，并可根据情节轻重处20000元以下罚款。  **第三十条**　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违反本规定第十九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并处10000元以下罚款。  **第三十一条**　违反本规定第二十条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改正；情节严重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停业整顿或者责令暂时关闭网站。  **第三十二条**　本规定所称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是指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相对集中地行使文化领域行政处罚权以及相关监督检查权、行政强制权的行政执法机构。  **第三十三条**　文化行政部门或者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查处违法经营活动，依照实施违法经营行为的企业注册地或者企业实际经营地进行管辖；企业注册地和实际经营地无法确定的，由从事违法经营活动网站的信息服务许可地或者备案地进行管辖；没有许可或者备案的，由该网站服务器所在地管辖；网站服务器设置在境外的，由违法行为发生地进行管辖。  **第三十四条**　本规定自2011年4月1日起施行。2003年5月10日发布、2004年7月1日修订的《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同时废止。 |